

120재단 시콜센터 구축 인력 인건비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

의 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2023년 2월 28일
제 출 자 : 120다산콜재단 이사장

1. 관련근거

- 『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』 제22조의2제3항
- 2022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

2. 주요내용

- 120다산콜재단은 시콜센터 추진을 위한 정규직 3명(ISP추진)을 증원 하였으며, 해당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경비 총194,370천원을 2022년 예산 내 정원증원 예비비 항목으로 편성하였음
- 2022년 ISP 추진 인력에 대한 채용이 완료됨에 따라 실제 소요가 예상되는 인건비 및 경비 총 90,767천원을 사용함
 - 세부 내역

(단위:천 원)

단위	세부	편성	예산현액	전용 금액		최종예산
				증액	감액	
예비비			294,370		90,767	203,603
일반관리비			25,210,127	90,767		25,300,894
	인건비		17,848,002	81,378		17,929,380
	경비		4,792,405	9,389		4,801,794

1. 『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』

제22조의2(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)

- ③ 출자·출연기관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. <신설 2019. 9. 26.>

2. '22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상편성 지침 및 집행기준

- 아래의 경우 인건비가 아닌 봉급(목적) 예비비로 편성
 - ② 설립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
- 예비비에 계상하는 총인건비는 채용에 따른 실소요액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채용 이후에 예산을 전용하여 실소요액을 집행한다.

※ 작성자 : 120다산콜재단 기획팀 임종혁 (☎ 3278-5730)